

특허청 위임전결규정 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특허청 위임전결규정 개정이유서

◇ 제 · 개정 이유

- 가.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개정(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8호, 2021. 7. 27. 공포·시행)에 따라 신설·개편 조직의 위임전결 신설 및 변경
- 나. 국·과간 업무조정·변경·신설 및 기타 미비사항 수정

◇ 주요내용

- 가. 전결사항 신설·변경(안 별표1)
-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, 상표특별사법경찰과, 부정경쟁조사팀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전결사항 신설·변경
 - 산업재산활용과의 “담보 산업재산권 사업“ 관련 전결사항 신설
- 나. 국·과간 업무분장 조정사항 반영 등(안 별표1)
- 정보고객지원국의 “보안 관련 업무” 및 “민원 관련 업무”를 각각 정보시스템과 및 등록과로 변경하는 등 국내 업무조정 반영
 - 산업재산정책국의 “우수특허제품 지원” 및 “특허공제사업” 업무를 각각 특허사업화담당관 및 산업재산활용과로 변경하는 등 업무조정 반영